



제 428국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등이 테러이용수단의
위력 · 위험성의 조사 · 분석을 위한 모의총포 제조 근거 마련 〉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813호)

2025.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7인
2. 제안연월일 : 2025. 6. 13.
3. 회부연월일 : 2025. 6.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테러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대테러기관이나 경찰청 등에서 테러이용수단의 위험성을 예방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려면 새로운 기술로 제작되는 모의총기의 위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직접 모의총기를 제작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모의총포의 제조·판매 또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실제 삼차원프린팅 등의 새로운 기술을 통하여 제작되는 모의총기의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 실질적 대응책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신기술을 동반한 사제총기가 제작·유통되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테러방지대응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테러이용수단의 위력이나 위험성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대테러기관이 모의총포를 제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 제11조의2제1항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계기관(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테러이용수단(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의 위력이나 위험성을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의총포(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를 제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그리고 개정안 제11조의2제2항은 모의총포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에 따른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안 제11조의2제3항은 관계기관이 모의총포를 제조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11조(모의총포 등의 제조·판매·소지의 금지) ①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模擬銃砲)라 한다]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개정안
② · ③ (생략) <신설>	제11조의2(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모의총포 제조의 특례) ①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7호1)에 따른 관계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이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테러이용수단(같은 법 제10조제1항2)에 따른 테러이용수단을 말한다)의 위력이나 위험성을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의총포를 제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모의총포를 제조하려면 사전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³⁾에 따른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이 모의총포를 제조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

개정안은 삼차원프린팅 등의 새로운 기술을 통하여 제작되는 모의 총기의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하여 대테러기관이 모의총포를 제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임.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모의총포의 제조를 금지하면서, 수출을 위한 목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경찰청은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 3) (생략)

다. 선박(「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의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해상구조물(같은 법 제2조제5호의 해상구조
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라. ~ 마. (생략)

2. ~ 5. (생략)

6.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의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
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7. “관계기관”이란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생략)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조(관계기관의 범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직영기업, 지방
공사 및 지방공단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①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
(이하 “테러대상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
물·총기류·화생방물질(이하 “테러이용수단”이라 한다),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①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
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③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2.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3.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

④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총포 안전계획을 수립하지만 모의총포를 제작하지는 않음.

또한,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는 총포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⁴⁾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정보통신망에 총포 제조 방법이 게시되는 경우 이를 적발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총포 제조 방법 등에 따라 실제 총포 제조가 가능한지 여부, 해당 총포의 위력 등에 대한 검증은 하고 있지 않음.

개정안 제11조의2제1항을 통해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인 경찰청 등이 테러이용수단에 해당하는 모의총포를 제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의총포의 위험성 및 위력을 검증하고, 총포 안전관리 대책을 세밀하게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 제11조의2제2항은 위력·위험성 조사·분석을 위해 모의총포를 제조하는 경우 사전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제조 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모의총포 제작을 엄격히 제한하고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을 통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유포 금지) 누구든지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제73조제1호의2에서 같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테러방지법」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인해 이 법 체계의 정합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⁵⁾

먼저, 개정안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모의총포를 제작할 수 있는 주체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계기관으로 규정하여, 대테러활동에 해당하는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및 국제행사 안전확보 등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모의총포를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기관들이 모두 모의총포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모의총포 제조 주체를 경찰청 등으로 제한할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다음으로, 개정안 제11조의2제1항은 모의총포를 제조할 수 있는 요건으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이용수단의 위력 및 위험성 조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테러이용수단은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총기류, 화생방물질을 의미하여 총포류에 해당하는 모의총포와 비교해 그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요건과 그에 따라 허용되는 조사의 범위가 적절하게 대응되는 것인지

5) 참고로,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관계기관이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테러이용수단의 위험성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의 허가를 요청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810호, 발의일자: 2025년 6월 13일)과 함께 발의되었음.

제21대 국회에서도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7197, 발의일자: 2022년 9월 2일)]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7205, 발의일자: 2022년 9월 2일)과 함께 발의되었음.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205)의 제안 이유에는 종래 한국과 일본은 총기 소유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총기 청정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사제총기에 피격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개정안 제11조의2제2항은 모의총포 제조 시 사전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제3항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평가,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있어 모의총포 제조 여부와는 다루는 안전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⁶⁾ 및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⁷⁾에서는 총포·화약류의 제조업을 하려는 경우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여 모의총포 제조 시에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관계기관에서 제조설비 및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모의총포 제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⁸⁾에 따라 모의총포 제조를

-
- 6)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③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2.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3.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
- 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조업의 허가) ① 총포·화약류의 제조업(총포의 개조·수리업과 화약류의 변형·가공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총포·화약류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 ⑤ (생략)
- 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모의총포 등의 제조·판매·소지의 금지) ①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신고한 자에게 제작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그 제작을 의뢰받은 자는 수출할 목적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기관이 모의총포를 제작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아닌 경찰청장에게 통지해야 하고, 그와는 별개로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모의총포 제조계획’과 ‘모의총포 및 제조법 유출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345

“모의총포”(模擬銃砲)라 한다]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